



KS 인증

Korean Industrial Standard
product certification





About FITI

FITI는 KOLAS 제1호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입니다.

FITI시험연구원은 KOLAS 제1호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서 지난 1965년 설립 이래 약 60여 년간 시험분석, 검사, 인증, 연구개발, 원인분석 및 컨설팅, 공장심사, 교육훈련에 이르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, 섬유, 건설, 화학, 환경, 바이오, 생활제품, 부품소재 등 전 산업 영역에 걸쳐 한국 뿐 아니라 외국정부 및 국제인정기구의 인정 및 지정을 받은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 700여명의 전문인력과 10,000여 대의 첨단 시험검사설비 등 최고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과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
FITI는 제9호 KS인증기관입니다.

FITI시험연구원은 2021년 5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독립적인 KS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섬유 및 건설분야를 주축으로 하는 신규인증과 정기심사, 사후관리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KS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※ 인증대상 : 국가기술표준원 지정고시품목

KS인증

산업표준화법에 따라 국가가 제정한 한국산업표준(KS) 이상의 제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·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하여 인증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KS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.

이는 표준화된 제품 및 서비스의 보급으로 거래 및 공정의 단순화·투명화를 촉진하고 소비자 보호와 공공의 안전성 확보 및 국민 경제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.





KS인증 분야

- K(섬유), F(건설) 2개 분야 지정

인증 범위	인증 품목
K	KS K 2618 : 직조카펫, 터프트 카펫 및 타일카펫
F	KS F 3888-1 : 실외체육시설 - 인조잔디
	KS F 3888-2 : 실외체육시설 - 탄성포장재
	KS F 8081 : 수직보호망
	KS F 8082 : 추락보호망

* 향후 K(섬유), F(건설) 분야의 지속적 품목확대 및 신규분야 지정 예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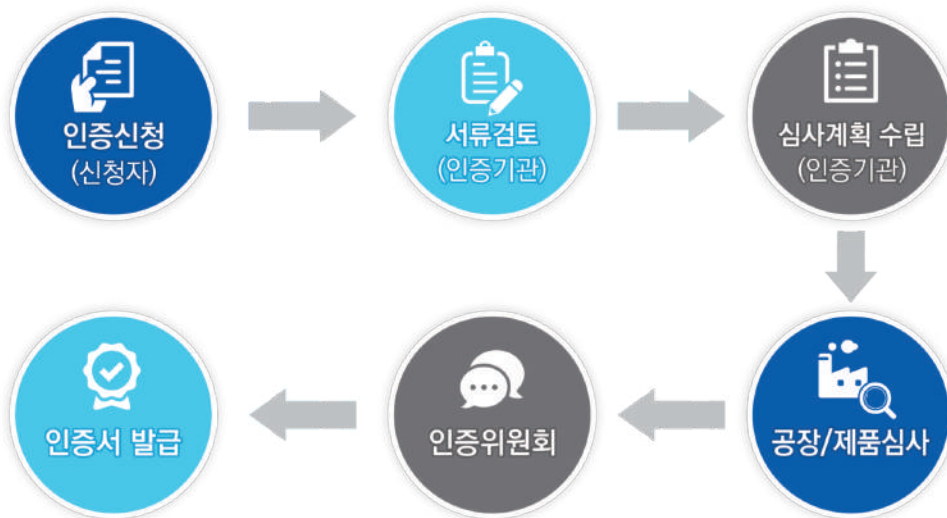
KS인증 효과

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 물품 구매에 대한 우선 구매(산업표준화법 제25조)
- 안전 인증 등 인증·검사·형식 승인에 대한 정부 또는 일부 면제(산업표준화법 제26조)
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지명 경쟁 입찰 등 입찰 계약 특례(국가계약법시행령 제23조)
- 건설자재 품질검사 생략(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1조)





KS인증 절차



- 심사일수(최초인증 시) : 1~3품목 2일, 4품목 이상 3일
(해외 소재 공장은 1품목 2일, 2~3품목 3일, 4품목 이상 4일)
※ 주요공정이 외주가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, 현장확인을 위하여 심사일수를 연장할 수 있음.
- 인증심사원수 : 총 2명

수수료

• KS제품인증 수수료

- 신청비 : 기본 1분야 50만원(1품목 추가시 25만원 추가(부가세별도))
- 인증심사원 출장비 : 「공무원 여비규정」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
- 공장 심사비 : 인증심사에 투입하는 인증심사원의 노임으로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중 사업부문별 고급기술자 노임단가를 평균한 값(만원단위 미만 절사)
- 제품시험비 : 신청품목에 따라 상이
 - * 출장 기간은 공장심사에 필요한 기간만 적용한다.
단, 해외출장일 경우에는 이동에 필요한 기간을 추가 적용한다.
 - * 공장심사비 산정의 기간은 심사에 필요한 일수로 하고, 공장심사비의 산정인원은 2명으로 한다.
다만,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이동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동에 필요한 일수의 2분의 1을 공장 심사비로 추가할 수 있다.



KS인증기관 변경절차



· 인증기관 변경 시 당해년도 정기심사 면제

- 인증기관 변경 신청서 : 한국산업표준(KS) 인증업무 운용요령 [별지 11]
(기한 재산정 : 합격일로부터 3년 뒤)

☑ 인증기관 변경불가 사유

- 정기심사 또는 이전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
- 표시제거 명령 등의 행정처분 중인 경우
- 인증취소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
- KS인증과 관련한 민/형사상 소송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경우
- 기타 분쟁 중인 경우



정기심사 및 1년주기 공장심사

•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 관련 법령

-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(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주기·절차·방법 등)
- 한국산업표준(KS)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38조(정기심사)

• 정기심사 주기 방법 및 절차

- 1) 인증받은 자는 인증받은 날부터 정기심사 기한이내에 심사를 받아야 함.
다만, 정기심사를 받아야 할 품목이 시기적으로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앞서 도래하는 품목에 일괄하여 정기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.
- 2) 인증받은 자가 3년 주기 정기심사를 받은 경우 정기심사 일을 기준으로 같은 연도에 1년 주기 공장심사를 면제함.

• 1년주기 공장심사

- 인증받은자는 산업표준화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정기심사로서 제품에 대하여는 공장심사를 받아야 하고, 서비스에 대하여는 사업장 심사 및 서비스 심사를 받아야 한다.
- 1.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인증제품의 정기심사 주기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.
 - 가. 별표 12에 따른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제품 : 매년.
다만, 정기심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에는 그 다음 1회의 정기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.
 - 나. 가목 외의 제품 : 매 3년